

<원문출처>

이 글은 2022년 5월 20일-21일 한성대 '이주의 인문학' 사업단에  
서 주최한 국제학술대회 <이주의 인문학: 감정, 문화, 그리고 지  
식>에서 발표된 원고 "Migration and the Philosophy of  
Movement"를 저자의 동의 하에 번역한 것입니다.

<저자소개>

### 토마스 네일 (덴버대학교 철학과)

토마스 네일(Thomas Nail)은 덴버대학교(the University of Denver) 철학과와 교  
수입니다. 토마스 네일의 연구는 이동과 이동성의 철학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다작 작가로 13권의 책과 학술지에 다수의 논문을  
발표했으며 주요 저서로는 The Figure of the Migrant (2015),  
Theory of Border (2016), 『존재와 운동』(2018), Marx in  
Motion: A New Materialist Marxism (2020), Theory of the  
Object (2021), 그리고 Theory of the Earth (2021) 등이 있습  
니다. 그의 단행본 중 일부는 아시아에서 여러 언어로 번역되었으  
며, 『존재와 운동』(2018)은 한국어로 번역되었습니다. 이 글은 국  
제학술대회 "이주의 인문학: 감정, 문화, 그리고 지식"의 기조연설  
로 초청되었으며 저자의 주요 저작인 The Figure of the Migrant  
(2015)와 Theory of Border (2016)로부터 이주와 관련한 중요한  
논점들을 종합하여 정리한 것입니다.

## II

## 이주, 그리고 문화의 윤리

라제쉬 차드라 슈클라 Rajesh C. Shukla

세인트 폴 대학교 Saint Paul University

### 들어가며

지난 40여 년간 많은 저명한 정치이론가들과 지식인들은 고전적 형  
태의 자유주의가 개인들의 고유한 역사적 상황, 그들의 사회적·문화적  
구성과 그 차이를 포착하지 못하고 있으며 다른 이유를 망각해서는 안  
되겠지만 이러한 이유만으로도 우리 시대의 정치적 현실과 쟁점을 다루  
는 데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해 왔다. 자신의 가장 영향력 있는 논문 중  
하나인 『인정의 정치』에서 찰스 테일러는 인정에 대한 요구가 개인의  
정체성과 존재를 구성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이며 "불인정이나 오인은  
피해를 주는 동시에 누군가를 그릇되고 왜곡되며 축소된 존재 양식에  
가두는 억압의 형태가 될 수 있다"(Taylor 1992, 25)고 주장한다. 그 종류를  
불분하고 동료 인간에게 피해를 가하거나 이와 관련해 누군가를 확대하  
는 것이 도덕적·정치적으로 부당하다는 데 동의하더라도 정체성 정치가

평등주의적 자유주의의 상실된 토대와 누락을 보충할 수 있는지, 아니면 많은 국가에서 볼 수 있는 사회경제적 부정의, 인종주의, 외국인 혐오, 반이민자 태도를 그저 악화시킬 뿐인지를 질문하는 것은 여전히 가능하다. 여러 자유민주주의 국가 및 정부의 작동방식과 그 리더십을 살펴보는 것이 우리에게 하나의 실마리를 제공할 수도 있다. 내가 생각하기에 정체성 정치, 특히 그것의 문화적 변이에 대한 강조는 자유주의적 보편주의와 관련된 도전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것은 정체성 정치를 통해 불공정, 배제, 부정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실로 근래 수십 년간 이러한 문제들이 더욱 악화되었으며 민주적 정치에 해로운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 또는 보다 현재의 맥락에서 말하자면 서구 사회에서 나타나는 정체성에 대한 과도한 강조로 인해 종족성·인종·종교·문화에 뿌리를 두고 있는 이데올로기적 긴장은 더욱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난점을 인정하면서 일부 사상가들은 집단별로 차별화된 권리에 대한 강력한 이론을 구축하는 것으로 이에 대응한다. 여기서 집단 권리는 개인 권리에 보다 민감하며 정치성의 가치를 명시적으로 표명하지 않음으로써 문화적 고려사항이 중요한 개인 권리를 지배하는 것을 거부한다(Kymlicka 1995, 37). 하지만 보다 실천적인 수준에서 우리는 일부 국가를 중심으로 다문화주의 정치철학에 대한, 나아가 그것을 지탱하는 힘인 문화적 다양성과 이주에 대한 반격이 펼쳐지는 상황을 실로 목도하고 있다. 심지어 토니 블레어, 안드레아 메르켈, 니콜라스 사르코지, 마린 르 펜과 같은 유럽의 일부 유력 지도자들은 다문화주의가 죽었다고 공언하기까지 했다. 그들의 우려를 일축하는 것은 너무 편리한 일이 될 것이다(Orgad 2015, 68). 나는 그들의 말을 진지하게 여긴다. 따라서 본 논문의 취지는 개인 정체성과 문화의 정치화를 성찰하는 한편 인간 존엄성, 자율성, 자유 및 평등과 같은 자유주의의 핵심적인 보편적 원칙의 맥락에서 이를 다시 상상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 나는 문화적 정체성에 대한 다문화주의의 주목이 자유주의적 보편주의의 틀 내에서 주목받을 필요가 있으며 평등주의와 보편주의에 대한 자유주의적 강조가 시민들 사이의 다양성을 보호할 수 없거나 “차이에 대해 비우호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오히려라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본 논문은 서론을 포함해 총 5개의 절로 구성되어 있다. 다음 절에서는 자유주의적 본질주의(liberal essentialism) 및 이에 대한 비판 — 그것은 시민들 사이의 차이를 인식하지 못하며 따라서 시민 의무의 충족을 위해 자신의 특수성으로부터 분리될 것을 강요한다 — 을 간략하게 개괄할 것이다. 세 번째 절에서는 개인의 특수한 문화적 의무와 다문화주의에 대한 논의를 바탕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언제나 개인의 권리가 집단별로 차별화된 권리보다 우위에 서야 하며 가능한 경우에는 언제나 집단 권리를 보충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시할 것이다. 개인성의 보호는 자유주의적 개인주의의 핵심에 놓여 있으며 다문화주의적 집단주의의 이름으로 타협되어서는 안 된다. 네 번째 절에서는 문화의 윤리 및 지난 수십 년간 그것에 의해 형성된 사회적·정치적 인식에 대해 논의한다. 문화의 윤리, 적어도 그것에 대한 일부 해석은 그 긍정성에도 불구하고 많은 국가에서 일어나는 소수자와 다수자 사이의 사회적 긴장이 지닌 복합적 성질을 강조함으로써 상이한 문화적 전통 사이의, 또 세계 각지의 현지인과 이주자 사이의 갈등을 강화해 왔다. 종종 부정되기도 하는 이러한 결과는 매우 불행한 것으로 이주자 문화의 가치에 대한 급진적인 공개적 주장이 그 반작용으로 동일한 힘의 반발을 사는 뉴트릭 함의를 갖는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절에서는 결론을 진술한다.

## 자유주의와 문화적 인정

공동체주의적 자유주의와 볼스적 자유주의를 비롯해 모든 종류의 자유주의 사상가들 사이에는 민주적 정부와 헌법이 개인의 자유, 권리, 존엄성과 자율성을 보호하는 한편 삶의 다양한 영역에서 시민의 자기실현으로 이어질 수 있는 우호적 여건을 보장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일반적 합의가 존재하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이러한 목표들이 어떠한 방식으로 달성되어야 하며 그것의 완전한 실현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다양한 견해가 존재한다. 임마누엘 칸트나 존 스튜어트 밀 등의 고전적 자유주의 철학자들은 법과 정책의 영역에서 만인의 존엄성과 자율성, 또 평등한 대우를 강조하고 민주적 제도가 인종·종족성·종교·문화 등의 우연한 고려사항에 기초하여 시민들을 구분하는 것에 반대했다. 이는 모든 사람이 실질적으로 또는 사회적으로 평등하여 시민사회와 정부의 일상적 작용 속에서 어느 누구도 우대를 받을 자격이 없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 장애인은 비장애인과 동일한 수준의 능력을 갖지 않으며 따라서 이들에 대한 공감과 정당함에도 절대적 평등을 요구하는 것은 기이한 일이 될 것이다. 실로 존 롤스가 보여준 바와 같이 정의의 원칙은 우리의 사회적 세계에 민감해야 하며 정치사회에서 “가장 소외된 자들”을 도울 채비를 갖추어야 한다. 모든 시민의 도덕적 평등 및 필요하고 자격 있는 자에 대한 가능한 지원을 일관되게 주장해 왔음에도 자유주의적 평등주의는 인간 개인성(personality) 및 근대 시민권의 핵심 측면을 놓치고 있으며 심층적 다양성, 이주, 종교와 문화가 제기하는 도전을 다루는 데는 태생적으로 부적합하다고 주장되고 있다. 가장 동정적인 해석에서도 자유주의적 평등주의는 여전히 보편주의적 포부를 지니고 있으며 구체적 경험과 삶의 정황

보다 추상적인 인식론적 관점과 사회철학을 우선시함으로써 인간의 행위성과 뿌리내림(rootedness)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다. “동등한 존엄성의 정치에서는 사회적으로 수립되는 것이 보편적으로 동일한 것, 동일한 권리와 면책의 묶음이라고 여겨진다. 그러나 차이의 정치가 우리에게 인정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다른 모든 사람과 구별되는 개인이나 집단의 고유한 정체성이다”(Taylor 1992, 388쪽; 이상형, 이광석 옮김, 『다문화주의와 인정의 정치』, 하우루 2020, 64쪽).

루소와 헤르더를 따라 테일러는 개인과 집단은 공히 인정을 얻기 위해 노력하며 다른 모든 선이 가용해지고 다른 모든 요구가 충족되더라도 — 이는 삶의 실제적 상황 속에서는 거의 현실화될 수 없는 목표이다 — 인정의 거부는 이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고 주장한다.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인정이 거부될 때 이들은 다른 수준에서도 주변화 될 것이다. 역사적이고 문화적인 관점에서 인간이 스스로를 어떻게 바라보느냐는 문제는 테일러의 시민권 개념과 밀접하게 관련되며 차이에 대한 그의 서사를 뒷받침한다. 역사적으로 볼 때 서구 사회, 실로 모든 사회는 종교적·문화적·경제적 측면에서 불평등하고 분열되었으며 많은 경우 지배하는 다수 집단이 소수자들을 제도적으로, 또한 개인적으로 억압해 왔다. 역사는 이러한 억압을 지켜본 확실한 증인이다. 다시 말해, 존엄의 정치가 물질적이고 역사적인 제약은 극복하고 이론에 명시된 그대로 현실로 옮겨질 것이라 가정하는 것은 다소 터무니없는 것이다. 오히려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사회적 불평등과 폭력은 이러한 기대에 물음표를 던진다.

하지만 존엄의 정치가 명시된 목표, 또 이와 관련된 기대를 충족하더라도 그것은 여전히 인정의 욕구와 관련해 테일러가 묻고 있는 근본적 질문에 답할 수 없을 것이다. 인정이 공동체주의자들이 강조해 온 양질의 풍요로운 삶을 사는 데 필수적이라면 다수자와 소수자는 서로에게

정당한 것이 무엇인지 지속적으로 합의하기 위한 대화에 참여해야 한다. 이러한 대화적 참여의 요구는 다수자뿐만 아니라 소수자들을 향한 규범적 요구이기도 하다. 하지만 정체성 이론가들은 억압을 받아왔다는 이유로 소수자들에게 특권을 부여한다. 테일러는 또한 인정에 대한 자신의 설명이 개인성과 공동체 권리를 제고하는 동시에 언어·문화·저임금·노동·차별·지식·생애 선택과 관련해 소수자들이 알려진 억압의 양태를 극복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 믿는다. “줄루 부족이 톨스토이와 같은 작품을 만들어낸다면 우리는 그것을 읽을 것’이라는 식의 유명한 말을 남긴 것으로 솔 벨로<sup>Saul Bellow</sup>가 인용될 때 그의 말은 유럽인들의 오만을 보여주는 전형적인 진술로 받아들여진다. 이는 그가 줄루 문화의 가치에 대해 실제로 무감각했기 때문만이 아니라 많은 경우 그 말이 원칙적으로 인간 평등을 부정하는 것으로 인식되기 때문이다.”(Taylor 1992, 42[각주: 68-69쪽]) 솔 벨로가 이러한 진술을 했는지는 분명치 않지만 그것이 논점은 아니다. 주위를 둘러보면 우리는 이러한 태도가 여전히 만연해 있음을 알게 된다.

따라서 테일러에게 인정은 개인과 집단의 정체성에 본질적이다. 그것을 부정하는 것은 실존적·도덕적·정치적·존재론적 문제를 제기하며 상기한 모든 근거에서 비판받을 수 있다. 다음 절에서 정체성의 요소에 대해 논의하겠지만 우선 그것의 두 가지 중요한 함의를 도출하고자 한다. 경제적 수준에서 차이의 정치는 만인의 기회 평등과 관련된 핵심적인 자유주의의 약속에 이의를 제기하고 결과의 평등을 통해 그것을 대체할 것을 제안하는 것처럼 보인다. 개인이나 집단이 그들의 노동이나 수고, 또는 필요에 기초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적 조건에 의해 무언가에 대한 자격을 얻는다는 점에서 이는 중요한 철학적이고 경제적인 함의를 가질 수 있다. 자유주의적 평등주의의 규범체계 내에서 이러한 자격부여가 아무런 조건 없이 승인될 수 있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이다.

더욱이 한 개인의 역사적 처함<sup>situatedness</sup>은 그의 현재의 삶을 온전히 비추는 거울이 아니며 만인의 근본적 평등이라는 자유주의적 원칙에 반할 수도 있다. 결과의 평등과 관련된 정책들은 가시적인 성과는 그다지 없으면서 이러한 정책으로 소외되었다고 일컬어지는 사람들을 도발하고 많은 이들의 분노와 원한을 자아낸다(Mishra 2017, 19).

다음으로, 『차이의 정치와 정의』(Justice and the Politics of Difference[각주: 조국 옮김, 모티브북, 2017])에서 아이리스 마린은 영Iris Marion Young은 기회균등 등의 문제에서 능력주의 원칙이 발휘하는 효능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한편 이러한 원칙이 주변화 된 집단을 향한 오랜 억압과 차별의 과정에서 하나의 도구가 되었다고 주장한다(Young 1990, 202). 영은 우리가 면접 및 채용 과정에서 지원자들을 윤리적으로 편향한 잣대로 바라봄으로써 소수자, 여성, LGBT, 흑인, 히스패닉계가 상당히 불리한 위치에 놓이는 반면 백인 남성들이 특권을 누림을 보여준다. 보다 최근에는 마이클 J. 샌델이 능력주의 윤리는 특수한 종류의 합리성과 도덕적 선을 강조하지만 공공선을 온전히 인식하지는 못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능력주의 윤리는 승자들을 오만으로, 패자들은 굴욕과 분노로 몰아간다. 이러한 도덕감정은 엘리트에 대한 포퓰리스트적 반항의 핵심에 자리 잡고 있다. 이민자들이나 아웃소싱에 대한 반항 차원을 넘어 포퓰리즘의 불만은 능력주의의 폭정을 향한다.”(Sandel 2021, 25) 영이 능력의 기준과 공정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반면 샌델은 능력이 사람들 사이에서 오만과 굴욕을 발생시킨다는 점에서 그것의 윤리적 결함과 씨름하는 것처럼 보인다. 샌델과 달리 영은 집단 권리에 관한 매우 특수주의적인 이론을 변호한다. 이러한 이론은 기성 규범과 다수결주의에 대립하여 발전된 것으로 인종·젠더·정체성 개념에 진지한 관심을 둔다. 둘은 상이한 근거에서 유사한 결론을 도출하는 것으로 보인다.

분명 기회균등도 다른 자유민주주의적 원리도 오늘날의 정치사회와

## 문화적 인정과 이주

거버넌스에서 그 완전한 잠재력을 실현한 적이 없다. 또 인도, 브라질, 인도네시아와 같은 개발도상국은 말할 것도 없고 미국, 캐나다, 영국 등 세계에서 가장 선진적인 국가에서조차 평등주의적 자유주의의 약속이 지켜지지 못했음을 정체성 이론가들이 올바르게 강조했다 말하는 편이 공정할 것이다. 게다가 민주주의가 진행 중인 작업, 즉 보다 완벽한 통합을 찾아나가는 지속적 탐색이라고 말하는 것도, 불평등이 완전히 제거된 건 아니지만 상기한 국가들에서 상당히 완화되었다고 말하는 것도 취약계층에게는 거의 위안이 되지 않는다. 문제에 현실론적 관점으로 접근하는 것은 이에 대한 변명이 되지 않는다. 평등주의가 실패했음을 감안하여 우리는 차이의 정치, 또 집단별 권리와 정책이 개인적 권리 및 복지와 양립될 수 있는지, 그리고 거기에 대가가 있어 핵심적 수준에서 개인주의와 자율성에 대한 자유주의적 약속을 잠식하는 것은 아닌지 질문할 필요가 있다. 테일러는 이러한 비판을 미리 예상하고 이렇게 적고 있다. “원형적인 존엄성의 정치를 지지하는 이들에게는 이처럼 [인정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일종의 전도, 배신, 자신들이 간직해 온 원리의 단순한 부정처럼 보일 수도 있을 것이다.”(Taylor 1992, 40) 달리 말해, 테일러의 주장이 옳다면 평등주의적 자유주의자들은 오늘날의 정치철학이 안고 있는 핵심 문제를 오해한 것이다. 문제는 평등주의가 완전한 잠재력을 실현하지 못했거나 역차별이 사회적 병폐의 해결에 효과적이지 못했다는 것이 아니며 이러한 실패로 인해 시민권과 공공생활이 저해되었다는 것도 아니다. 핵심적인 논점은 역사적·문화적 개인화와 집단 권리를 위해 차이를 고려하지 않는 자유주의를 명시적으로 거부할 것이 인정과 정체성 정치에 요구된다는 것이다. 다음 절에서 나는 집단 권리가 개인 권리에 역행하며 정체성 이론가들은 집단의 지배와 헤게모니에 맞서 어떻게 개인성이 보호될 수 있는지, 또 이러한 보호가 실제적인 상황에서 지속될 수 있는지 설명할 필요가 있음을 입증할 것이다.

평등주의적 자유주의가 종교적·문화적 인정 및 개인별·집단별 권리와 정체성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은 정확하지 못할 것이다. 자유주의적 입헌주의와 정치철학의 역사를 간단히 살펴보기만 하더라도 자유주의 사상가들은 적절한 입헌적 보호조치를 제공함으로써 종교적·문화적 측면을 비롯해 다양한 형태와 표현으로 나타나는 개인성의 개발을 일관되게 지지해 왔음을 알 수 있다. 예컨대, 권리와 자유에 관한 캐나다 헌장(1982)은 기본적 자유, 법적·민주적·교육적 권리와 평등권을 열거하면서 캐나다인들이 갑작스런 파기나 중단 없이 이러한 권리들을 향유할 수 있도록 했다. 마찬가지로 인도의 헌법은 종교적·문화적·언어적 권리와 집단 권리에 대한 강력한 보호를 제공하는 한편 혹시 있을지 모를 권리 침해에 대해서도 보호조치를 마련하고 있다. 인도 헌법(1950) 제29조 제1항은 “인도 영토 내에 거주하는 자들로서 자체의 별도 언어·문자·문화를 보유하는 시민 집단 내지 이의 일부는 동 언어·문자·문화를 보존할 권리를 갖는다”고 명시한다. 그럼에도 자유주의(또한 합의를 자유주의적 입헌주의)는 “(a) 이러한 권리를 정의하는 규칙을 예외 없이 확립적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b) 집단적 목표를 의심”(Taylor 1992, 60(주석: 91쪽))한다는 이유로 차이에 우호적이지 않다고 여겨진다. 이러한 비판이 자유주의적 정치사회와 입헌주의를 성찰하는 것인지는 여전히 불분명하지만 만약 그러하다면 이러한 우려를 해소할 대안적 정식화를 모색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확립성에 대해 말하자면, 나는 자유주의 국가와 정부가 소수자의 집합적 목표와 열망을 지원하기 위해 때때로 많은 예외를 허용해 왔으며 이것이 평등주의적 근거에 입각한 것이었다고 생각한다. 나는 철학적이고 이데올로기적인 이유에서

평등주의적 정당화가 다문화주의자들에게 충분하지 않음을 인정한다. 따라서 더 많은 인정과 수용의 필요성은 강화된다. “고전적 자유주의가 평등한 개인들의 자율성을 보호하고자 한 반면 다문화주의라는 새로운 이데올로기는 각 문화에 참여하는 개인들의 자율성이 약화되더라도 이러한 문화에 대한 평등한 존중을 강조했다.”(Fukuyama 2018, 111)

자유주의는 역사적으로 공동체의 맥락에서 발전했으며 개인의 권리가 지배적 공동체에 의해 약화되거나 침해될 수 없도록 많은 경우 집단주의적 열망에 맞서 개인 권리를 정의해 왔다. 이것이 자유주의의 강점임에는 분명하지만 자유주의의 본래적 실패는 인종주의, 종족성, 반이민자 태도, 적의, 차별을 비롯한 여러 사회적 병폐와 더불어 자유주의 프로젝트의 설계 결함이라는 통념을 부채질하는 것처럼 보인다. 어디에서도 집합적 목표가 무가치하거나 방기되어야 한다고 암시된 적은 없다. 분명 많은 집합적 목표는 우리의 사회적 삶에 매우 중요하며 특히 근본적으로 상이한 문화적 맥락에 처해 있는 소수자 공동체 및 이주자의 권리에 대해서는 더욱 그러하다. 시급한 질문은 보다 이론적이고 철학적인 것이다. 개인의 목표와 집단의 목표가 충돌할 때에는 무엇을 할 것인가? 몇 가지 이유에서 자유주의가 이러한 질문을 진지하게 여기는 반면 다문화주의 이론가들은 이를 너무 성급하며 심지어 불필요한 질문이라고 생각한다. “많은 자유주의자들은 종족적·민족적 집단들이 요구하는 ‘집단적 권리들’이 정상 개인 권리에 적대적이라며 두려워한다. 이러한 견해는 전직 총리 피에르 트뤼도에 의해 캐나다에서 대중화되었다. 그는 퀘벡의 자치권 요구에 반대하는 이유를 설명하면서 자신이 ‘개인의 우선성’을 신봉하며 ‘오직 개인만이 권리의 소유자’라고 말했다. 그러나 개인적 권리와 집단적 권리를 대립시키는 이러한 수사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Kymlicka 1995, 35(각주: 정동진, 황민혁, 송경호, 변명환 옮김, 『다문화주의 시간론』, 동명사, 2018년, 73-74쪽) 키피카에 따르면 개인의 자유는 자신의 문화와 밀접하게

결합될 뿐만 아니라 그것에 의존한다。(Kymlicka 1995, 75(각주: 155-156쪽))

집단과 개인 사이의 차이가 발생할 때 집단의 맹공에 맞서 어떻게 개인을 보호할 것이냐는 문제와 관련해 키피카는 종족적·민족적 소수자에 대한 보호조치를 강구할 때에는 내부적 제재와 외부적 보호를 구분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내부적 제재란 한 집단이 성문화되거나 불문율적인 규칙·규정·정책 등을 채택함으로써 집단의 구성원들에게 구속력 있는 효과를 미치는 것을 가리킨다. 예컨대, 한 집단은 특정 사안에 대해 종교적이거나 문화적인 입장을 취하고 그 구성원들도 이를 따르도록 권장할 수 있다. 또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조치를 취하거나 위협할 수도 있다. 다시 말해, 집단은 내부적 제재를 이용해 순응을 지시하거나 이견을 진압할 수 있다. 외부적 보호는 한 집단을 외부의 압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보호는 집단의 문제와 그 문화에 대한 개입을 막는 방호벽으로 기능하며 외부 세력이 집단의 내부 문제에 지배력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한다. 그리하여 다문화주의 이론에서 내부적 제재와 외부적 보호는 매우 상이한 목적에 복무한다. 외부적 보호를 확고하게 옹호하면서도 올바르게도 키피카는 내부적 제재를 폐물로 취급한다. “내가 주장하고자 하는 바는 자유주의자들은 집단 간 공정성을 증진할 경우 일정한 외부적 보호를 지지할 수 있고 또 그래야 하지만 전통적 권위와 관행에 의문을 제기하고 수정할 집단 구성원의 권리를 제한하는 내부적 제재는 거부해야 한다는 것이다.”(Kymlicka 1995, 37(각주: 77-78쪽)) 더 크고 지배적인 집단을 마주하는 소수자 집단을 지원하기 위해 합리적 개인이 외부적 보호를 지원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은 타당하지만 내부적 제재를 극복하는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다. 이러한 기대는 얼마나 현실적인가?

한 집단이 그 구성원들에게 사회적이고 문화적인 규범을 부과하는 것은 흔히 알려진 현상이다. 한 집단에 소속된다는 것은 때로 순응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것은 이주자와 디아스포라의 삶에 대해 많은 문제를 함축한다. 1세대 이주자들은 그들이 떠난 나라의 가치 체계에 더 높은 애착을 보여주는 경우가 빈번하며 많은 경우 자녀들을 이러한 가치 체계에 따라 양육하기를 원한다. 이는 특히 여아 및 젠더 관련 차이와 관습에 해당한다. 여러 연구에 따르면 개인성은 여러 가지 방식으로 침묵을 요구받을 수 있으며 집단의 압력은 개인의 심리에 과중한 부담을 준다. 개인이 자신이 속한 집단에 저항하는 것이 이론적으로 가능하고 이를 지원하는 법적 제도가 존재할 수 있더라도 이를 실천하는 것은 극단적으로 어렵거나 많은 경우 불가능하다. 한 집단과 그 행위에 고유한 도덕적·법적 권리를 부여하는 순간 이로 인해 개인의 자유와 평등이 최소화되더라도 이러한 집단 권리의 행사를 제한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을 것이다. 또 이러한 남용의 가능성은 집단별로 차별화된 권리와 관련해 심각한 문제를 낳을 것이다. 키피카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권리를 승인한다. ① 자치권<sup>self-government right</sup>, ② 다종족 권리<sup>polyethnic right</sup>, ③ 특별대표권<sup>special representation right</sup>(Kymlicka 1995, 37-38(각각 78-79쪽)). 역사적 근거에서 민족적 소수자의 자치권 보유를 인정하는 동시에 키피카는 민족적·종족적 소수자에게 다종족 권리와 특별대표권을 또한 귀속시킨다. 상기한 세 권리 중 특별대표권은 아마도 가장 논쟁적이며 본 논문에서 간략하게나마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특별대표권의 취지는 종족적·민족적 소수자들이 선출직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소수자들의 대표자가 선출직에 당선되는 빈도는 많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여전히 매우 낮은 실정이며 이는 많은 경우 소수자들의 결집력이 약하고 선거 경쟁에서 이기기에 충분한 득표를 모으지 못하기 때문이다. 또 여기에는 추가적인 이유도 있다. 라파엘라 M. 댄시거<sup>Rafaela M. Dancygier</sup>가 『포용의 딜레마: 유럽 정치에서의 무슬림 Dilemmas of Inclusion: Muslims in European Politics(2017)』에서 보여준 바와 같이

주요 정당들은 선거 정치에서 소수자들을 수용하려는 의지가 약하며 이주자의 투표가 해당 선거구에서 결정적인 요인이 되지 않는 이상 상징적 포용 이상의 노력을 쏟지 않는다. 또 한 구역에 이주 인구가 집중되는 것은 자체의 문제점과 함께 “소수민족 거주지나 게토, 또는 평행사회”가 생겨날 잠재적인 위험도 내포한다. 이러한 점에서 키피카는 올바르게 문제를 짚고 있다. 하지만 산술적 대표성<sup>descriptive representation</sup>에 관한 그의 해법은 더 많은 검토를 필요로 한다.

산술적 대표성은 우리가 정체성 정치에 확고하게 자리 잡은 개념들을 수용하는 한에서만 도덕적으로 정당화된다. 산술적 대표성의 핵심에 놓인 것은 우리와 같은 생각새를 하고 있는 이들이 우리의 관심사와 우선 과제, 또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들을 명확하게 표명함으로써 우리를 더 잘 대변할 수 있다는 믿음이다. 이러한 추론에는 이론의 여지가 있다. 사람의 생각새는 그들이 어떻게 투표할지에 대해, 또는 선출직으로서 어떠한 활동을 수행할지에 대해 거의 아무 것도 말해주지 않는다. 더욱이 철학적 수준에서 산술적 대표성의 아이디어에 무언가가 있다면 균질적 사회는 정치를 비롯한 여러 문제들에 대한 답을 벌써 찾아야 했을 것이다. 경험적 수준에서 보자면 유사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잘 해나가는 모습을 보는 것은 고무적인 일이 될 것이다. 이는 그들의 성공이 무엇보다 자신감과 낙관주의를 불어넣기 때문이다. 하지만 상이한 인종적·문화적 결을 가진 사람들이 사회 또는 국가 속에서 함께 살아갈 때 이러한 낙관주의는 보다 큰 사회적 맥락에서 육성될 필요가 있다. 목표가 차별과 부정의에 맞서 싸우는 것이라면 우리는 소수자들과 다수자에 대해 이런저런 고정관념을 갖게 하는 스테레오타입을 부추겨서는 안 될 것이다. 민주 국가에서는 모든 개인들이 정치 과정의 성공에 기여해야 하며 이러한 기여에 대한 흔들림 없는 믿음은 실질적 대표성<sup>substantive representation</sup>의 이념에 필수적이다.

민주적 정치는 이해관계와 권력을 기초로 작동한다. 유의미한 대표성을 얻기 위해 소수자들은 선거 정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지역에서 활동하는 단체와 공동체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 또 소수자 후보자의 입후보를 독려하는 한편 왜 다른 동료나 경쟁자가 아니라 이들이 선출되어야 하는지를 설명해야 한다. 소수자 후보가 정치를 보다 풍부하게 한 다거나 정치 과정을 확장한다고 말하는 것과 별개로 그것이 하나의 이데올로기적 주장으로 바뀐다면 그것은 소수자와 다수자, 현지인과 이주자 사이의 긴장을 높이는 역효과를 낼 수 있다. 그것은 철학적인 근거에서, 심지어 경험적인 근거에서도 거의 정당화될 수 없는 것이다.

## 이주와 문화의 윤리

『정체성: 존엄에 대한 요구와 분노의 정치 Identity: The Demand for Dignity and the Politics of Resentment(국역: 이수경 옮김, 『존중받지 못하는 자들을 위한 정치학』, 한국경제신문, 2020)』에서 프랜시스 후쿠야마는 현대 정체성 정치의 세 가지 상이한 원천을 짚어낸다. ① 인간의 인정에 대한 갈망, ② 내적 자아와 외적 자아의 구분, ③ 존엄의 개념(Fukuyama 2018, 9-11). 인정에 대한 갈망을 인간의 인성 및 존재론과 결합하면서 후쿠야마는 자아의 내·외적 구성을 루소에, 존엄의 개념을 도덕 철학자들과 민주주의 이론가들에게 귀속시킨다. 이전에도 모종의 형태로 이러한 구분이 존재했더라도 근대성은 분명 이를 확대했다. 찰스 테일러에 따르면 인정에 대한 요구가 하나의 욕구를 구성하며 이 때문에 이러한 욕구의 실현은 인간적 성취와 번영에 필수적이라는 점을 첫 번째 절에서 살펴본 바 있다. 이제 후쿠야마는 정체성과 인정의 정치가 소수자 및 집단별 권리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회적·정치적 제도와 사건에도 중심적인 요소가 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는 이렇게 적고 있다. “따라서 정체성 정치는 민주주의 혁명이나 새로운 사회운동, 민족주의와 이슬람주의, 미국의 대학 캠퍼스에서 목격되는 정치에 이르기까지 오늘날 세계에서 일어나는 정치 투쟁들의 상당 부분을 아우른다”(Fukuyama 2018, 1). 다시 말해, 존엄과 고유성에 대한 다문화주의적 추구는 민주적 연대의 가교를 넘어 근본적으로 상이한 집단과 정치세력들의 극심한 좌절과 분노로 이어졌다.

더 강하게 말하자면 불만과 굴욕의 느낌이 정체성 정치와 경쟁적 정치 양극화를 구성하고 선별된 지지자 집단과 이데올로기적 기반을 결집하게 되었다. 그는 러시아 대통령 블라디미르 푸틴과 중국 시진핑 주석의 예를 언급한다. 푸틴은 소련의 붕괴로 인한 러시아의 권력 상실을 애석해 하는 한편 러시아 국가와 그 지도자들에게 결여된 도덕적 우월성을 내세우는 서구의 태도에 불만을 제기한다. 한편 중국의 시진핑 주석은 세계 2위의 경제 대국이 된 시점에서 한 세기 동안 중국이 겪은 굴욕에 대해 이야기한다. 과거의 부정을 암시하는 것은 독재 국가에서 시민들의 결함을 육성하며 민주주의 국가에서도 모종의 ‘선별적 연대’를 형성하는 데 유용할 수 있다. 이와 유사한 현상은 민주주의가 심화된 국가들에서도 목도할 수 있다. 캐나다 다문화주의 정책과 담화의 틀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퀘벡의 경우 정치인들과 지도자들은 빈번하게 퀘벡인들이 겪은 역사적 부정과 퀘벡의 문화와 가치에 가해진 억압에 대중들의 관심을 환기한다. 나는 앞서 테일러와 김리카를 비롯한 다문화주의 사상가들이 퀘벡인들의 우려에 대한 공감적 이해를 보여주지만 문화의 윤리에 관한 어려운 문제들을 제기하면서 퀘벡에서 채택된 집단별로 차별화된 정책에 대해 일부 이의를 제기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캐나다 퀘벡주는 스스로를 프랑스의 유산과 동일시하며 그 언어와 문화, 가치에 자부심을 갖는다. 프랑스어 사용자는 캐나다 전체적으로는 소수이지만 퀘벡에서는 지배적 다수를 구성한다. 또 이러한 문화적 지위의 차이는 퀘벡의 정책 입안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전통적으로 퀘벡인들은 자신들의 주와 언어, 그리고 문화에 대해 다문화주의적인 ‘외부적 보호’를 요구해 왔으며 무슬림, 유대인, 힌두교도, 시크교도 등 내부의 종교적·문화적 소수자들을 통합하고자 했다. 이는 퀘벡 내에서는 다수지만 캐나다 내에서는 소수인 프랑스어권 백인들이 자신들보다 훨씬 그 수가 적은 퀘벡 내부의 소수자들을 대하면서 자신들의 소수자 지위와 관심사가 보존되어야 한다고 요구할 때 당혹스럽고 복잡한 상황을 발생시킨다. 이때 제시되는 이유는 퀘벡이 하나의 민족으로 살아남기 위해 퀘벡의 언어적·문화적 유산이 온전하게 보존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공동체의 권리가 개인의 권리에 우선한다는 믿음 — 또한 이것이 자유주의와 양립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인간화하는 것이라는 믿음 — 은 실로 독특하게 캐나다적인 직관이다” (Gopnik 2009, 30).

프랑스어 사용 민족의 언어적·문화적 생존을 강력하게 지지하더라도 그것이 퀘벡 내 소수자의 정체성 및 집단별로 차별화된 권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숙고해 보는 것은 가능하다. 이를 사고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자유주의 사상가들이 다수자의 가치를 소수자에게 부과하는 것에 저항하고 내부적 보호의 형태로 필요한 보호조치를 강구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민족적 또는 종족적 소수자의 경우 이러한 보호의 적용은 문제가 될 수 있다. 민족적 수준에서 볼 때 퀘벡주의 언어법이 요구하는 것처럼 부모 중 한 명의 모국어가 영어가 아닐 경우 자녀의 대중교육이 프랑스어로 이루어져야 한다면 이는 오히려 상황을 후퇴시키는 것처럼 보인다. 다시 말해, 퀘벡주는 영어에 비해 프랑스어에 특권적인 지위를 부여한다. 당연히 이러한 정책의 지지자들은 정체성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문제이며 또 언어의 보급이 공동체의 유대를 공고히 한다며 그것의 시행을 정당화했다.

하지만 상기한 목표를 명분으로 보다 논쟁적인 정책들이 채택되면서 이러한 지지는 줄어들었다. 2019년 6월 법률로 채택된 빌21<sup>Bill21</sup>은 퀘벡주 시민사회의 세속적 관점을 강력하게 수용하여 주요 책임자 직위에 있는 공무원의 종교 상징물 착용을 불허했다. 이 법은 퀘벡이 비종교 주로서 관공서에서 종교적 표현을 허용할 수 없다는 점을 들어 교사, 경찰수사관, 판사, 기타 공무원의 히잡, 크리판<sup>(kripan<sup>1</sup>)</sup>, 키파<sup>(kippa<sup>2</sup>)</sup> 사용을 금했다. 법적 도전이 계속되었음에도 빌21은 퀘벡주 상급법원에 의해 인용되었다. 퀘벡주 관공서에서의 종교적 상징 사용이 자유주의적 가치나 다문화주의적 가치로 여겨질 수 있느냐의 여부는 논쟁의 여지가 있다. 마찬가지로 퀘벡 주정부 역시 비종교 또는 세속 주의 관공서에 종교적 색채를 주입한다는 점에서 그것은 자유주의적 가치도, 다문화주의적 가치도 아니라고 생각한다. 나아가, 그것은 합리적 수용의 요구를 넘어서는 것이다. 합리적 수용의 개념은 퀘벡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용어로 “캐나다 사회 내에서 오랫동안 주변성과 취약성을 겪은 일부 피해 집단의 경우 다양한 소수자들을 차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설계된 규정이 그 목표를 놓칠 수 있다고 [캐나다] 연방법원이 판시했을 때”에야 하나의 법적 개념으로 발전하였다. (Adelman and Ancill 2011, 9) 빌21과 그 법적 근거의 광범위한 사회적 함의를 감안할 때 이 쟁점은 아마도 적절한 시기에 캐나다 대법원에서 판가름될 것으로 추측된다.

퀘벡주의 빌21에 대한 다문화주의적 비판은 대체로 종교적 자유, 인간의 존엄, 권리와 자유에 관한 캐나다 헌정(1982), 개인의 민주적 권리 등을 그 근거로 삼았다. 앞서 우리는 빌21이 또한 애덤 고프닉<sup>Adam Gopnik</sup>이 말한 ‘캐나다적 직관’에 상당히 반하는 세속적 근거에서 옹호되었음을 살펴본 바 있다. 해석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이러한 난투는

개인에 우선하는 한 공동체나 민족의 다문화주의적 권리 표명에 포함된 단층선 및 이러한 권리가 지니는 심대한 윤리적 함의와 한계를 드러낸다. 헤르더가 구상하듯 하나의 공동체가 문화적 자기보존의 권리를 갖는다면 그것의 언어와 가치의 보존은 필수적이게 된다. 또한 공동체는 자유주의가 증진하고 충실하게 변호하는 개인의 선호와 성향에 반해 자기 권리를 주장할 수 있으며 이러한 가능성은 실로 현실이 될 것이다. “헤르더는 문화적 진정성에 대한 자신의 사상을 당대의 독일에 적용하면서 ... 독일 사람들이 이류 프랑스인이 되려하기보다는 자신의 문화와 전통에 자부심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Fukuyama 2018, 61) 빌21의 옹호자들은 헤르더를 따라 그것이 상호문화주의와 연결되는 퀘벡주의 가치를 진정성 있게 표명하는 것이며 또한 퍼스트네이션<sup>3)</sup>이 몇몇 사안과 관련해 “캐나다의 지배적인 시민권 개념이 지닌 식민적 성격과 억압적 성질에 기초해 그것을 진지하게 비판하거나 기각할”(Adelman and Ancill 2011, 12) 때 견지했던 태도가 빌21의 입장과 매우 흡사하다는 점에서 캐나다인들이 이를 수용해야 한다고 말할는지 모른다. 더욱이 이러한 억압은 역사적 부정의 및 언어와 문화의 소외를 강조하는 퀘벡의 민족주의 서사에도 잘 들어맞는다.

다문화주의 및 다문화주의 정책·프로그램·변인에 대한 논쟁을 살펴볼 때 종족적·문화적 다양성도, 민족적 소수자의 선호도 순수한 도덕적 선을 구성하지 않으며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이를 어떻게 추구하고 적용하느냐에 따라 긍정적인 결과를 낳을 수도, 부정적인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는 결론을 피하기는 어렵다. 이것이 옳다면 — 내 생각에는 그러하다 — 자유주의 사회는 다문화주의에 대한 보다 비판적인 이해를 채택함으로써 문화를 우선시키고 문화가 개인과 집단의 삶에서 지닌 장점과 가치를 인정하면서도 그것이 항상 공개적 성찰과 비판에 열려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변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문화에 신성한

또는 타협할 수 없는 규범적 지위를 부여함으로써 비판의 문이 닫히는 순간 문화에 대한 인정 역시 약해지고 위태로워질 것이다.

따라서 나는 서구 사회에 자리를 잡은 이주자 문화는 자신의 역사적 기원·정체성·목적·진정성에 민감하면서도 지역적 전통과의 대립 속에서 자신을 인식해서는 안 된다고 제안한다. 상호작용과 지지는 이주자 문화의 안정성과 내구성에도 필수적이다. 자신의 문화에 대한 이해는 다른 문화 및 그 문화의 관행에 대한 존중과 배치될 수 없다. 문화적 보존은 대화적 과정 속에서 당사자들이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의 역사적 처함을 존중할 것을 요구한다. 예컨대, 퀘벡의 사례에서 프랑스계 캐나다인들이 시간과 역사의 측면에서 역사적이고 문화적인 우선권을 가지고 있음은 분명한 사실이다. 또 캐나다 내에서는 퍼스트네이션이 자신의 문화적 권리를 훨씬 더 강력하게 주장할 수 있다는 것도 마찬가지다. 이들 공동체가 다른 공동체들을 수용하기 위해 자신의 문화적 전통을 바꿀 수는 없다. 더욱이 이러한 조정을 기대하는 것은 전적으로 비현실적이고 오만한 일이 될 것이다. 따라서 퀘벡에 정착한 이주자들은 자신의 종교적·문화적 철학을 따르면서도 이곳에서 일반적인 가치들을 가급적 많이 배려할 필요가 한다.

요컨대, 문화적 인정의 윤리는 소수자와 다수자 집단 사이의 상호 이해와 합리적 수용의 실천을 제고함으로써 집단별로 차별화된 권리와 개인적 자유·평등을 존중할 수 있는 반면 인정의 정치는 이러한 차이들을 강조함으로써 시민들 간의 긴장과 불화, 또 편파화를 조장한다. 이러한 긴장은 많은 서구 국가와 수도에서 분명하게 나타나며 이를 “개탄스러운 자들의 저항”이나 “백인의 반격”으로, 또는 “교육받지 못한 제도포비아적 백인들의 반동”으로 일축한다면 잘못된 일이 될 것이다. 논쟁의 정치(politics of contestation)와 정치적·이데올로기적 다문화주의가 약속한 것과는 달리 그들이 보다 공정하고 내구적이며 차별 없는 사회를 만드는 데

성공하고 있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공정은 이주자와 현지인 사이의, 실로 한 사회의 모든 구성원들 사이의 사회적 연대와 지원을 요하며 이는 공동 시민권에 관한 쟁점에 대해 각자의 대응을 모색하면서 서로의 관점과 우선과제, 또 사고방식을 이해하게 될 때에만 실현될 수 있기 때문이다. 공동의 미래를 함께 추구하면서 자신들의 종교적·문화적 가치를 강조할 자유와 기회를 가져야 한다는 점은 분명하다. 하지만 그들은 또한 오해를 받을 때 인내하는 법을 배우고 이해하고 이해받기를 바라는 이들에 대해서는 격려할 수 있어야 한다. 외국의 문화와 보조를 맞추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닐 것이다. 하지만 대립보다 이해와 연대를 우선한다면 우리는 분명 서로에 대해 마음을 열게 되고 서로를 더 잘 알게 될 것이다.

## 결론

과거 수십 년간 자유주의적 평등주의는 많은 실패로 비판받아 왔으며 이러한 비판은 정당하다. 그것은 사회경제적 부정의, 인종적 차별과 지배, 경찰의 폭력과 야만성, 이주자·유색인·소의 공동체의 시민권 침해 등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완전히 성공하지 못했다. 온갖 경멸과 증상비방으로 다른 종족과 인종, 문화를 묘사하는 대통령과 마주하고 있는 히스패닉계 미국인이자라면 “노력하면 할 수 있다”는 말은 공허한 슬로건처럼 들릴 것이다. 세속학교로 알려진 곳에서 터번을 쓰고 있다는 이유로 10대 시크교도가 축구를 하지 못하거나 히잡 때문에 여성들의 기회가 박탈될 때 자유주의적 평등주의의 한계는 일상적으로 드러난다. 또 이를 통해 부유한 국가에서 소수자들이 직면하는 애로가 부각된다.

자유주의적 평등주의에 이의를 제기하려는 경향이 이해가능하고 강력한 데에는 몇 가지 정당한 이유가 있다. 하지만 그럼에도 정체성과 인정의 정치 또는 다문화주의가 잃어버린 땅을 회복할 수 있는지는 여전히 분명하지 않다.

이 글을 통해 나는 권리의 문화적 가치화와 집단별로 차별화된 시민권이 문제의 일부를 해결할 수 있더라도 그것은 개념적이고 실천적인 수준에서 다른 많은 문제들을 발생시킨다고 주장했다. 더욱이 그것은 내적 비밀관성에 빠져 있다. 문화적 권리는 공동체에 특수하며 상이한 공동체들은 상호 모순적인 의무를 가질 수 있다. 또 합리적인 공동의 판단 척도가 부재할 경우 우리에게 남은 선택지는 대립하는 신념들이 직접적으로 대결하거나 아니면 모든 것을 맹목적으로 수용해 일종의 상대주의의 지대에 적용하는 것뿐이다. 아무런 제약 없이 문화적 권리가 지배할 때 표현의 자유는 축소된다. 하지만 적절한 수준의 문화적 민감성이 없다면 표현의 자유 역시 적대와 공격으로 미끄러지고 진실의 소통과 이해에 대한 욕망이라는 그것의 으뜸가는 목표가 좌절될 수도 있을 것이다. 필요한 것은 상호 인정과 존중이며 적절하게 추구할 경우 평등주의적 존엄의 정치는 이를 떠받칠 수 있다. 이주자, 소수집단, 다수자가 다함께 상호 이해와 연대, 올바른 인식의 정치에 참여함으로써 여러 문제를 함축할 수 있는 대립적 정체성과 긴장된 인정의 정치를 피해야 한다. 

〈원문출처〉

이 글은 2022년 5월 20일-21일 한성대 '이주의 인문학' 사업단에서 주최한 국제학술대회 〈이주의 인문학: 감정, 문화, 그리고 지식〉에서 발표된 원고 "Immigration and the Ethics of Culture"를 저자의 동의하에 번역한 것입니다.

〈저자소개〉

**라제쉬 차드라 슈클라 (세인트 폴 대학교)**

라제쉬 C. 슈클라 Rakesh C. Shukla는 세인트 폴 대학교 Saint Paul University의 부교수 겸 공공윤리학과 the School of Public Ethics의 학과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의 연구 관심 분야는 도덕과 정치 철학의 교차점, 특히 우정과 정의, 이주와 이민, 윤리, 그리고 공공 정책, 세속주의와 민주적 시민권, 환경윤리 등에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라제쉬는 다음과 같은 저널에 다수의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Annales: Ethics in Economic Life* (2018); *French Journal of Media Research* (2018 & 2016); *Frontiers of Philosophy in China* (2014); *East and West Thought* (2014); *Toronto Slavic Quarterly* (2013); *Contemporary Thought* (2013); *Philosophy, Culture and Tradition* (2013); *Maritain Studies* (2013); and *Existenz* (2011). 각각 2013년에는 저널 *the Journal of Philosophy, Culture and Tradition*, 2018년에는 저널 *French Journal of Media research*의 객원 편집자로 활동한 바 있습니다. 현재 연구 프로젝트는 이주와 이민이 민주 사회와 복지 국가의 기능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는 데 전념하고 있습니다. 또한 "윤리와 공공생활(Ethics and Public Life)"에 관한 저서를 편집하고 있으며, 세인트 폴 대학교에서 "윤리와 공공 정책"에 관한 연구 그룹을 이끌고 있습니다.

III

이주와 지식, 감정, 물질의 이동

김 지 윤

한성대학교

모빌리티 턴의 가능성

2000년대 중반 이동성(mobility) 중심의 패러다임 등장을 일컫는 '모빌리티 턴(mobility turn)'은 현대사회를 이해하는데 있어서 정주(dwelling)를 인간의 정상적이며 지배적인 상태로 보던 패러다임에서 사람은 물론 사물, 사상, 문화까지도 지속적으로 이동 중이며 이러한 이동성의 시각을 중심에 두어야 한다는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을 의미한다. 철학에서는 고대 로마의 루크레티우스(Lucretius)부터 중세 스피노자(Baruch Spinoza) 그리고 현대의 질 들뢰즈(Gilles Deleuze)에 이르는 다수의 철학자들이 이미 이동성에 기반한 존재론과 인식론적 논의를 전개시켜왔으며<sup>1)</sup>, 이들의 논의가 인류학, 사회학, 지리학 등의 기반에서 모빌리티 담론에 관심을 가져온 학자들(Appadurai, 1986; Clifford, 1997; Urry, 2000; Cresswell, 2006; Sheller and Urry, 2006; Cresswell and Merriman, 2011; Bauman, 2011; Sheller, 2021)에게 상당한 영향<sup>2)</sup>을 주었다. 이동